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지역 내 기업 투자의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규정(안 제2조)
-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등 규정(안 제4조의2,3)
-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을 규정(안 제19조)
-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하여 규정(안 제24조의2)
-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 정비하여 규정 (안 제24의3조)
-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 폐지(안 제27조)
-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(안 제3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및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지역 내 기업 투자의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-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내용과 위촉해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, 산업용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·임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관내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및 대규모 투자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선 폐지 등으로 우리 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